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 달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2022. 1.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기획 조정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  
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법령을 인용  
하고 있는 우리 구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 정비의 능률성  
제고와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19개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안 제1조~제19조)

○ 다음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여 구  
청장이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고 있는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안 제1조)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 상위 법령 개정사항의 단순 반영 내용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은 제외하였습니다.

##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 2022년 1월 2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19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오니,
-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042202
----------	--------

제출년월일: 2022. 1. 16.  
제출자: 달서구청장  
(기획조정실장)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법령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 정비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규정을 개정 후 조항으로 일괄 정비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19개 조례(안 제1조~제19조)
- 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독립에 관한 사항 반영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안 제1조)

##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 나.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 2) 「지방자치법 시행령」
-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생략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비대상
  -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5)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6)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동장 및 의회사무국장”을 “동장”으로 한다.

제2조 중 “별표 2,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를 “별표 2와”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제2조(「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다만,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을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4조(「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

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로 한다.

제6조(「대구광역시달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를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로 한다.

제7조(「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64조”를 “「지방자치법」 제73조”로 한다.

**제9조(「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90조”를 “「지방자치법」 제102조”로 한다.

**제10조(「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13조(「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4조(「대구광역시달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구 분	기준	수수료	근 거
1. 공사 · 용역 · 물품 실적증명	1통	1,000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2.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명 이하의 배	1통	1,2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명 이상 10명 이하의 배	1통	2,200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명 이상 20명 이하의 배	1통	3,200원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명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1통	5,200원	

3. 보건 관계			
가.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1통	10,000원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별지 제14호서식
나. 안마시술소 장소 이전 변경신고	1통	5,000원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별지 제14호서식
4. 그 밖의 사실 공부 등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1통	1,000원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제15조(「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조”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한다.

**제16조(「대구광역시달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조”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한다.

**제17조(「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

역시달서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으로 한다.

**제18조(「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

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19조(「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 광역시달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를 “「지방자치법」 제130조”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 제1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p> <p>-----</p> <p>-----</p> <p>----- 동장-----</p> <p>-----</p> <p>-----</p> <p>-----</p> <p>-----</p> <p>-----</p> <p>-----</p> <p>제2조(위임사항) -----</p> <p>-----</p> <p>-----</p> <p>----- 별표 2와 -----.</p>

### 제2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p> <p>-----</p> <p>-----</p> <p>-----</p>

<p>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 ----- ----- ----- -----.
---	---

### 제3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b>제3조(조례) ① (생 략)</b> ②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b>제3조(조례) ① (현행과 같음)</b>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 ----- ----- 「지방자치법」 <u>제32조제6항</u> ----- ----- ----- -----.
<b>제7조(공포방법 등) ①</b>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보(이하 “구 공보”라 한다)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 ③ (생 략)	<b>제7조(공포방법 등) ①</b> ----- ----- -----.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제4조 「대구광역시 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생 략)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 ----- ----- ----- -----.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을 20%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 ----- ----- -----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5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수수료 감면) 기업유치와 기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민원처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p>	<p>제8조(수수료 감면) ----- -----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p>

<p><u>징수기준에 관한 규정</u> 제2조에 서 정한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으 로 감면한다.</p> <p>1. ~ 3. (생략)</p>	<p><u>징수기준에 관한 규정</u> 제2조-- -----. -----.</p> <p>1. ~ 3. (현행과 같음)</p>
---	---

## 제6조 「대구광역시 달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지방자치 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8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 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p>	<p><u>제1조(목적)</u> ----- 「지방자치 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 -----. -----.</p>

## 제7조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지방자치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 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 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p>	<p><u>제1조(목적)</u> ----- 「지방자치 법」 제9조제1항----- ----- -----. -----.</p>

## 제8조 「대구광역시 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지방자치</p>	<p><u>제1조(목적)</u> ----- 「지방자치</p>

<p>법」 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 ②</b> (생 략)</p> <p>③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p> <p>④ (생 략)</p>	<p>법」 제150조제3항-----</p> <p>-----</p> <p>-----</p> <p>-----</p> <p>-----</p> <p><b>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 ②</b>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p> <p>-----</p> <p>「지방자치법」 제73조-----.</p> <p>④ (현행과 같음)</p>
---	---

## 제9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b>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b>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지방자치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사무국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p> <p>2. (생 략)</p> <p>② · ③ (생 략)</p>	<p><b>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b> -----</p> <p>-----</p> <p>-----</p> <p>-----</p> <p>-----</p> <p>-----</p> <p>-----</p> <p>1. 「지방자치법」 제102조-----</p> <p>-----</p> <p>-----</p> <p>2.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제10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 ----- -----.

## 제11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지·분합 3. ~ 6. (생략)	제3조(주민투표의 대상) ----- ----- -----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 3. ~ 6. (현행과 같음)

## 제12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 -----.

## 제13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생 략)</li> <li>4. “기금”이란 구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u>「지방자치법」 제142조</u>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 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li> <li>5. ~ 6. (생 략)</li> </ol>	<p>제2조(정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현행과 같음)</li> <li>4. ----- <u>「지방자치법」 제159조</u> -----</li> <li>5. ~ 6. (현행과 같음)</li> </ol>

## 제14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39조</u> 및 각 개별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별표] 수수료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기준</th><th>수수료</th><th>근 거</th></tr> </thead> <tbody> <tr> <td>1. 공사·용역·물품 실적 증명</td><td>(생 략)</td><td>(생 략)</td><td></td></tr> <tr> <td>2. 유선 및 도선의 안전 검사 신청</td><td></td><td></td><td></td></tr> <tr> <td>가. (생 략)</td><td>(생 략)</td><td></td><td rowspan="4">(생 략)</td></tr> <tr> <td>나. (생 략)</td><td>(생 략)</td><td></td></tr> <tr> <td>다. (생 략)</td><td>(생 략)</td><td></td></tr> <tr> <td>라. (생 략)</td><td>(생 략)</td><td></td></tr> </tbody> </table>	구 분	기준	수수료	근 거	1. 공사·용역·물품 실적 증명	(생 략)	(생 략)		2. 유선 및 도선의 안전 검사 신청				가. (생 략)	(생 략)		(생 략)	나. (생 략)	(생 략)		다. (생 략)	(생 략)		라. (생 략)	(생 략)		<p>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u> -----</p> <p>[별표] 수수료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기준</th><th>수수료</th><th>근 거</th></tr> </thead> <tbody> <tr> <td>1. (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d></td></tr> <tr> <td>2. (현행과 같음)</td><td></td><td></td><td></td></tr> <tr> <td>가. (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d></td><td rowspan="4">(현행과 같음)</td></tr> <tr> <td>나. (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d></td></tr> <tr> <td>다. (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d></td></tr> <tr> <td>라. (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d></td></tr> </tbody> </table>	구 분	기준	수수료	근 거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 분	기준	수수료	근 거																																																
1. 공사·용역·물품 실적 증명	(생 략)	(생 략)																																																	
2. 유선 및 도선의 안전 검사 신청																																																			
가. (생 략)	(생 략)		(생 략)																																																
나. (생 략)	(생 략)																																																		
다. (생 략)	(생 략)																																																		
라. (생 략)	(생 략)																																																		
구 분	기준	수수료	근 거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보건 관계			
가. (생 략)	(생 략)	(생 략)	
나. (생 략)	(생 략)	(생 략)	
4. 그밖의 사실 공부 등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1통	1,000원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 제15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만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p> <p>2. ~ 3. (생 략)</p>	<p><b>제2조(정의)</b> -----</p> <p>-----.</p> <p>1. ----- 「지방자치법」 제16조-----</p> <p>-----.</p> <p>2. ~ 3. (현행과 같음)</p>

### 제16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b>제2조(용어의 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p> <p>2. ~ 5. (생 략)</p>	<p><b>제2조(용어의 정의)</b> -----</p> <p>-----.</p> <p>1. ----- 「지방자치법」 제16조-----</p> <p>-----.</p> <p>2. ~ 5. (현행과 같음)</p>

## 제17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 제18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9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교육환경개선과 인재육성 등 지역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u>「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u> 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u>지방자치법</u> 」 제130조----- ----- ----- ----- ----- .

# 【관 계 법령】

## □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지방의회는 제3항에 따라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조

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자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
-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제73조(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 · 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 ② 시 · 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 · 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 · 사무국장 · 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 ·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 · 교육 · 훈련 · 복무 ·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 ·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 · 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 · 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 ·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 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자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전부개정]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